

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39호(2020.4.9.)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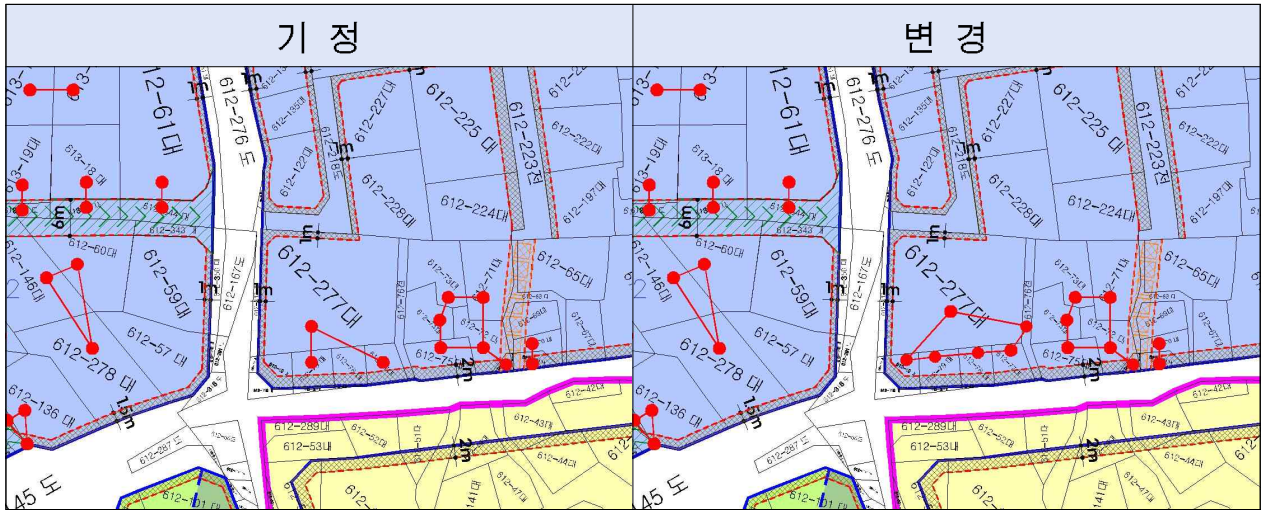
2023년 3월 2일
강 서 구 청 장

1.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

가구번호	지 번	면 적(㎡)	계획 내용		비 고
			기 정	변 경	
RC-3a	방화동 612-77	43.0	공동개발 (지정)	공동개발 (지정)	
	방화동 612-79	38.0			
	방화동 612-277	444.0			
	방화동 612-76	20.0	-		
	방화동 612-78	38.0			
	방화동 612-80	33.0			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, 변경)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(☎ 2600-638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